

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안전총괄과

제정 2023. 12. 22 조례 제204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관리”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2. “안전관리”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시장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,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
2. 인과 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
3.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
4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
5.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
6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7.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5조(지원내용)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

제6조(포상)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